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업무지침(붙임2)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적(경연대회 등)표창의 경우 지침: VII. 장관시상 운영 특례 지침 p.13~15
 - 표창장(안) p.23
 - 장관상장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 p.25
2. 공정한 심사계획(심사기준, 절차, 과정, 심사위원)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계획 수립 시 자체 심사계획을 마련할 때에는 심사 기준, 심사 절차, 심사 과정, 심사위원 선정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사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붙임3) 및 감염병 예방(붙임4) 대책 수립하여 주시고 행사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보고서(붙임5) 양식을 참고·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전사고 예방(행안부 홈페이지) 및 감염병 예방 메뉴얼은 최신 메뉴얼(지침) 적용
4. 단체팀 수상일 경우, 팀 소속 개인의 상장발급 확인서 배부 안내(참고)
 - ※ 기 발급한 단체(팀) 상장 중 복사·위조·변조하여 배부한 상장이 있는 경우 우리부 식품외식산업과로 자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상장 수상자의 자긍심과 영예로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복사·위조·변조 사례

단체(팀) 명의로 나간 상장을
 참여자 개인 명의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형법 상 공문서 변조죄(제225조), 변조문서 행사죄(제229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함

< 단체상 지급(지침 14페이지) >

- 다수의 개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팀으로 상을 받는 경우에는 「팀명의」로 상장을 교부하며, 단체명의로 시상 시 그 구성원에게는 장관시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다만, 두 사람 이상의 개인 또는 둘 이상의 단체가 하나의 팀을 이루지 않고 협업하여 공동출품 또는 공동출전 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시상할 수 있음
 - * 「공동명의」 시상 시, 상장에 공동수상자 이름(명칭)을 나란히 기재(홍길동·김갑동)하여 각각 상장을 교부하되, 공동수상자가 3인(또는 3개 단체) 이상인 경우 수상자별 이름(명칭)과 나머지 수상자의 수를 기재(홍길동 외 ○명)하여 교부

< 상패·기념패 제작(지침 15페이지) >

- 상패·기념패 등 표창물 제작 시 농식품부 운영지원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전자인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체상 수상자가 수여 확인서 발급(지침 15페이지) >

- 표창을 받은 자로부터 그 수여사실의 확인을 요청(이메일, 유선 포함) 받은 경우, 운영지원과에 표창수여 증명서 발급 신청서(서식 6)를 제출하여 수여확인서(서식 7)를 발급받아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 (절차) ①수상자(요청자)가 표창수여 증명서 발급 신청처(서식6) 작성
 ②수상자(요청자)가 농식품부 운영지원과(044-201-1270)에 요청
 ③운영지원과에서 발급 → 수상자(요청자)에게 발송